

[암호화폐분쟁] 민사소송으로 비트코인의 인도청구 및 대상(환가금액)청구 인정: 부산지

방법원 서부지원 2018. 10. 23. 선고 2017가단11429 판결



1. 비트코인 반환청구에 대한 판단

원·피고는 2017. 3. 경 원고가 피고에게 디지털 암호화폐(cryptocurrency)인 비트코인을 보내 주면 피고가 이를 현금화하여 사용한 뒤 약 한 달 후 같은 수량의 비트코인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한 사실, 이에 원고가 2017. 3. 13. 피고에게 비트코인 암호화폐 4비트코인(BTC, 이하 'BTC'라 한다)을 보내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·2,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,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비트코인 암호화폐 4BTC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.

2. 대상(代償)청구에 대한 판단

만일 위 비트코인 암호화폐 인도의무 집행이 불가능일 때에는 피고는 그 전보배상으로
서 원고에게 위 비트코인 암호화폐의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
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[본래의 급부와 그 집행불능 시의 이행에 갈음하는 손해배상
을 아울러 청구하였을 경우에 그 대상금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본래의 급부의
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(대법원 1960. 8. 18. 선고 4292민상733 판결,
대법원 1975. 7. 22. 선고 75다450 판결 참조), 원고가 피고에게 그 이행을 최고한 일
자인 2017. 12. 5. 기준 시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
없는 것으로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],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8. 9. 4. 무렵 비트코
인 암호화폐의 국내 시가가 1BTC당 8,254,000원임은 공지의 사실이므로, 피고는 위 비
트코인 암호화폐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가능일 때에는 원고에게 비트코인 암호화폐 1BTC
당 8,254,000원의 비율로 환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첨부: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. 10. 23. 선고 2017가단11429 판결

조사자문, 계약분쟁, 형사/민사소송, 손해배상, 화해계약, 합의 등 One-Stop 대응

T. 02-591-0657 E. kkh@kasanlaw.com H. www.kasanlaw.com